

부천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(MBT) 건립공사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

의 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2010. 12. .

제 출 자 : 건설교통위원장

1. 주 문

「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부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‘부천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(MBT) 건립공사’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한다.

1. 사업 초기 도입과정의 적정성 여부
2.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및 적합성
3.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신기술 관련 기술협약서 및 성능보증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여부
4.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과 현재 시공한 시설의 적정성(무단 설계 변경 등) 여부
5.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도달한 공사의 계약해지 없이 계약 계속이행의 적정성 여부
6. 기술력의 한계로 당초 계약조건 이행불능 상태인 시공사 및 시설 공사에 대한 처리방안
7. 시설공사 추진 관련 관계공무원의 업무추진 적정 여부
8. 시설공사 관계자(시공사, 감리사)의 책임소재 규명

2. 제안이유

- 부천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(MBT) 건립공사는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07번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에 생활쓰레기를 1일 90톤을 기계적 처리하여 고품연료(RDF) 55톤 생산을 목적으로 총 사업비 156억원(국비35, 도비24, 시비97)을 투자한 사업으로,
- 이러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(주)대우 컨소시엄(참여 지분: 대우건설 55%, 태영25%, 한솔EME 20%)과 설계·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계약하여 동부엔지니어링(주)를 전면책임감리자로 두고 2008.12.26 ~ 2010.5.31까지 계약목적물을 완공·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, 공사 준공기한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시설물의 성능이 불비하여 준공되지 못한 채 시공사에서 계속적으로 보완작업만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,
- 공사의 장기 준공 지연 및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설물이 미완성될 경우 부천시에서는 막대한 행정적·재정적 손실 등 예산 낭비는 물론 청소행정 신뢰성 실추와 생활쓰레기 처리 대란 발생 등 88만여명의 부천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될 처지에 있음.
- 이에 해당사업의 문제점 및 책임규명을 위하여 부천시 및 시설관계업체(시공사, 감리사)의 사무처리 및 계약이행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-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1부.
- 관련 증거자료 1부.

<제1호 서식>

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(국민용 등)

수신 : 감사원장

청구일자 : 2010. 12. .

1. 청구인	대표자 성명	부천시의회회의장 (인)	청구인 수	명
	주민등록번호		전화번호	032-625-8051
	주소	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56번지		
2. 감사대상기관	부천시(사업시행), 대우건설 컨소시엄(시공사), 동부엔지니어링(감리사)			
3. 감사청구 제목 : 부천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(MBT) 건립공사 관련 예산낭비 등에 관한 감사 청구				
4. 감사청구사항	“ 별지 1 ”			
5. 청구이유	“ 별지 2 ”			
6. 기타	1. 사업 추진관련 탄원서 사본 1부. 2. 시정 질문 및 답변서			
7. 관련증거자료	1. 부천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(MBT) 건립공사 현황 1부 2. 공사계약 서류 1건 3. MBT시설 시운전 데이터 1부. 4.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사본 1부.			

[별지 1]

□ 감사 청구사항

- 사업 초기 도입과정의 적정성 여부
-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및 적합성
-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신기술 관련 기술협약서 및 성능보증서 등 관련서류 제출여부
-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과 현재 시공한 시설의 적정성(무단 설계변경 등) 여부
-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도달한 공사의 계약해지 없이 계약 계속이행의 적정성 여부
- 기술력의 한계로 당초 계약조건 이행불능 상태인 시공사 및 시설공사에 대한 처리방안
- 시설공사 추진 관련 관계공무원의 업무추진 적정 여부
- 시설공사 관계자(시공사, 감리사)의 책임소재 규명

[별지 2]

□ 청구 이유

- 부천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(MBT) 건립공사는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07번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에 생활쓰레기를 1일 90톤 기계적 처리하여 고품연료(RDF) 55톤 생산을 목적으로 총 사업비 156억원(국비35, 도비24, 시비97)을 투자한 사업으로,
- 부천시에서는 이러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(주)대우 컨소시엄(참여 지분 : 대우건설 55%, 태영25%, 한솔EME 20%)과 설계·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계약하여 동부엔지니어링(주)를 전면 책임감리자로 두고 2008.12.26 ~ 2010.5.31까지 계약목적물을 완공·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, 공사 준공기한 6개월이 경과한 2010.12월 현재까지 시설물의 성능이 불비하여 준공되지 못한 채 시공사에서 계속적으로 보완작업만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,
- 공사의 장기 준공 지연 및 결국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설물이 미 완성될 경우 부천시에서는 막대한 행정 및 재정적 손실 등 예산낭비는 물론 청소행정 신뢰성 실추 및 생활쓰레기 처리 대란 발생 등 88만 여명의 부천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될 처지에 있음.
- 이에 해당사업의 문제점 및 책임규명을 위하여 관련기관인 부천시 및 시설 관계업체(시공사, 감리사)의 사무처리 및 계약이행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함.

[관련 증거자료]

부천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(MBT) 건립공사 현황

□ 사업개요

- 위 치 :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07번지 (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)
- 부지면적 : 7,800㎡ (1,590㎡. MBT홍보관 별도)
 - ※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 전체면적 : 130,291㎡
- 공사기간 : 2008. 12. 26 ~ 2010. 5. 31 (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)
- 시설규모
 - 동 수 : 2동 (전처리시설1동, 홍보관 1동)
 - 층 수 : 전처리시설 (지하1층,지상3층), 홍보관 (지상1층)
 - 연면적 : 4,456.94㎡ (전처리시설 3,975.86㎡, 홍보관 481.08㎡)
- 시 공 자 : (주)대우건설, (주)태영건설, 한솔이엠이(주)
 - ※ 컨소시엄 지분 : 대우(55%), 태영(25%), 한솔(20%)
- 감 리 자 : 동부엔지니어링, 도화종합기술공사, (주)부광네트워크
- 공사금액 : 14,300백만원
- 사업방식 : 설계·시공 일괄 입찰방식

□ 추진경위

- 2004. 6월 고형연료(RDF) 처리시스템 도입 검토 지시
- 2005. 1월 쓰레기 효율적 처리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
- 2006. 10월 경기도 재정투융자 심사
- 2007. 5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
- 2007. 10월 MBT시설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
- 2008. 2월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 개최
- 2008. 12월 우선 시공분 착공
- 2009. 5월 실시설계 적격 심의 및 본공사 착공
- 2010. 5.19 공사기간 연장 (11일 연장)
 - 당초 : 2008.12.26 ~ 2010. 5.20
 - 변경 : 2008.12.26 ~ 2010. 5.31
- 2010. 5.31 준공 예정 (미준공)